

무보증구매론 이용약관서 (판매기업용)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무보증구매론 이용약관서 (판매기업용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9 조(이용시간) (기재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제 10 조 (정보제공의 동의) (기재생략)</p> <p>제 11 조 (약관의 체결 및 변경) (기재생략)</p> <p>제 12 조 (면책) (기재생략)</p> <p>제 13 조 (효력) (기재생략)</p> <p>제 14 조 (관할법원의 합의)</p>	<p>무보증구매론 이용약관서 (판매기업용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9 조(이용시간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0조 (지연이자 수취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“상생협력법”)」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하도급법”)」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(할인료 또는 대출이자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① 구매기업이 「상생협력법」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무보증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② 구매기업이 「하도급법」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,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무보증구매론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</p> <p>제 11 조 (정보제공의 동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2 조 (약관의 체결 및 변경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3 조 (면책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4 조 (효력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5 조 (관할법원의 합의)</p>	<p>금감원 요청에 따른 「상생협력법」, 「하도급법」 안내 문구 판매 기업 약관 기재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 <p>체하</p>

<p>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</p> <p>(기재생략)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
---	---	--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2월 31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